

또 다른 김용균

문화예술노동자 산재실태현장발표

사회: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일시: 2020년 12월 8일 (화) 14시

장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주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
주관: 문화예술노동연대



발표

영화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방송스태프	김기영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방송작가	김한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
출판	김원중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사무국장)
공연	임인자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조합원·공공극장안전대책추구연극인모임)
웹툰/웹소설/일러스트	정화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조합원)
타투	김도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



*페북라이브 진행합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_페이스북_ <https://facebook.com/artswokers>)

영화 현장의 산업재해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1.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영화 현장

1993년 촬영 중 헬기 추락으로 인한 스태프 및 주연배우의 사망사고, 1999년 조명팀의 크레인 전복으로 인한 사망사고, 2002년 기차역 플랫폼에서 촬영 중 발생한 출연자의 사망사고, 2006년 장시간 촬영 후 이동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2006년 조명팀의 크레인에서의 추락사고, 옥상 난간에서 작업 중이던 조명팀 추락사고, 2010년 무술감독의 추락사고, 2011년 조명팀의 손가락 절단 사고, 2014년 세트 제작팀의 손가락 절단 사고, 의상팀의 촬영 중 교통사고, 2016년 촬영 중 스텐트맨의 교통사고, 2018년 영화 촬영 중 출연자의 낙마 사고, 2019년 촬영용 크레인 이동 중 전복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그럴싸한 장면을 찍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극적인 효과를 위해 폭발 장면을 연출하고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의 좀 더 그럴싸한 장면을 위해 안전은 나중이었다. 안전을 위해 대비를 하는 것은 괜한 우려라는 인식과 시간을 소모하는 일정 정도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 졸음운전 사고

다음의 촬영 준비를 위해 밤을 새워 세팅하고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미술팀의 경우 월 400시간이 넘게 일을 하고 쉬는 날도 특정되지 않으니 피로가 가실 날이 없었다. 밤을 지새우고 이동 중에 일어난 차량사고는 크게 다치지 않으면 앓땀한 것으로 넘어가는 일이 예사였다. 근로기준법 적용 현장이 늘어나고 현장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감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사라지며 예전과 같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빈도는 많이 줄었으나 촬영 준비의 업무까지 맡게 되는 연출, 제작, 미술 부서의 경우는 최근까지도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있다.

[일 평균 노동시간 및 근무일]¹⁾

일 평균 노동시간	약 12시간(11.72시간)
주 평균 업무일수	5.2일
1주 평균 노동시간	약 61시간(60.93시간)

[평균 휴식시간, 수면시간, 야간근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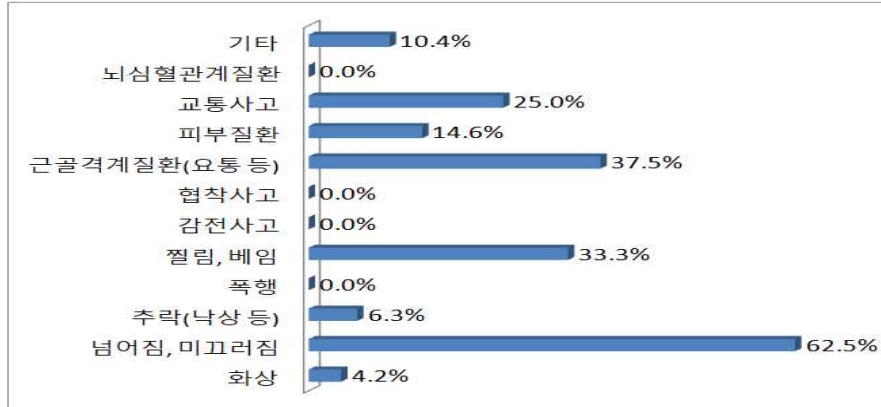
회차 사이 평균 휴식시간	9.17시간
1일 평균 수면시간	약 7시간(6.90시간)
1주 평균 야간근무시간	약 11시간(10.55시간)

○ 촬영 중인 현장의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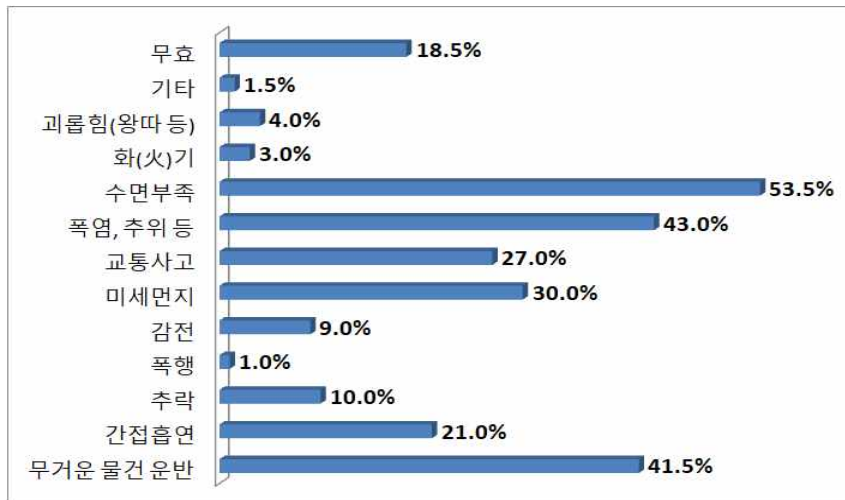
촬영 중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일정 부분 예비된 것이다. 좀 더 극적인 영화적 효과를 위해 폭발 장면이 촬영되고 화재 장면이 연출된다. 사실적인 화면을 위해 주행 중인 차량을 촬영한다. 달리는 차량의 촬영은 일반도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대개 도로의 통제 여건으로 인해 시간은 제약되어 있고 그에 따라 촬영을 진행하다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촬영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는 현장의 직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촬영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카메라와 가깝게 일하는 부서로 연결되며 또한 현장에서의 사고는 상당 부분 출연자의 사고를 동반한다. 출연자 중에서도 위험한 장면 연출 때마다 투입되는 무술팀 및 스텐트팀이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숙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

1) 2019 고용노동부 단체지원사업으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서 수행한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김현호 노무사, 공동연구원: 최여울 노무사·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연구보조원: 이진환 현장 스태프 조합원) 중, 본 발표 중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표, 차트 등은 같은 출처의 자료임.

[재해사고의 유형(%)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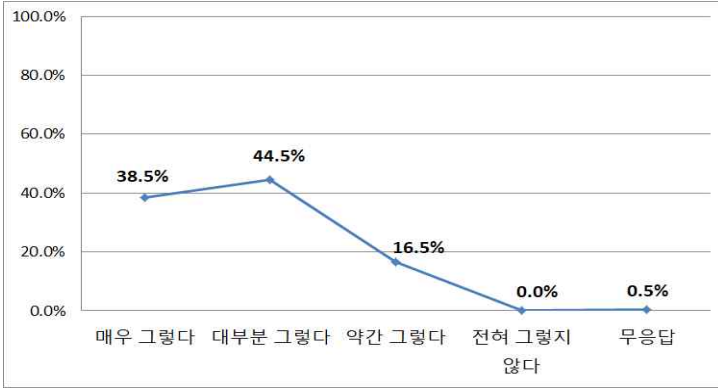
[영화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에 대한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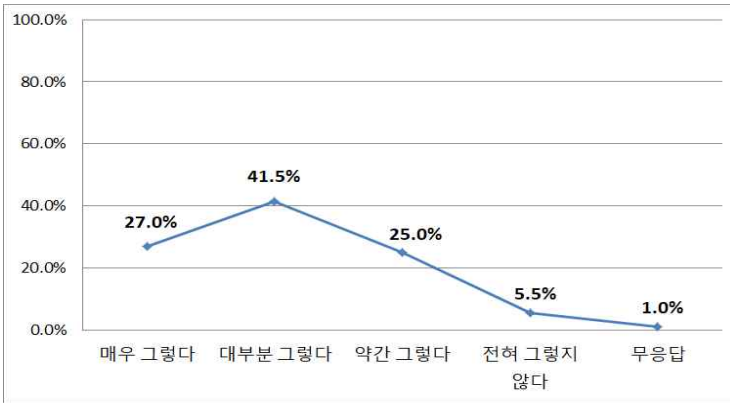
○ 작업 현장의 스트레스

최근 영화 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은 개별 스태프에게 업무능력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서두르게 만들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9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88.5%가 작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두려움, 수면부족, 두통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작업 스트레스는 업무수행의 기한준수 요구 및 업무처리 시간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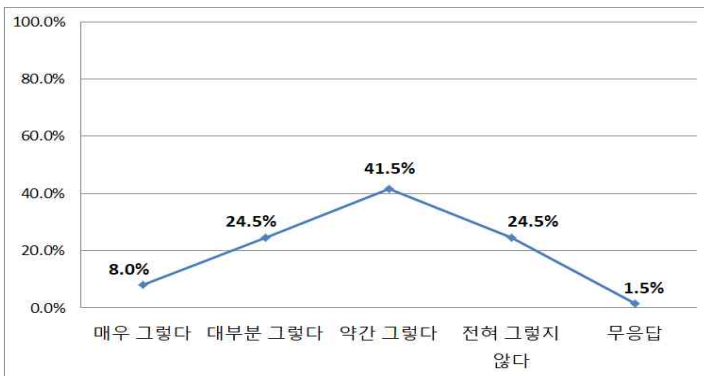
[영화업무수행의 빠른 속도처리 요구에 대한 응답 (%)]



[업무수행시 시간적 여유의 부재에 대한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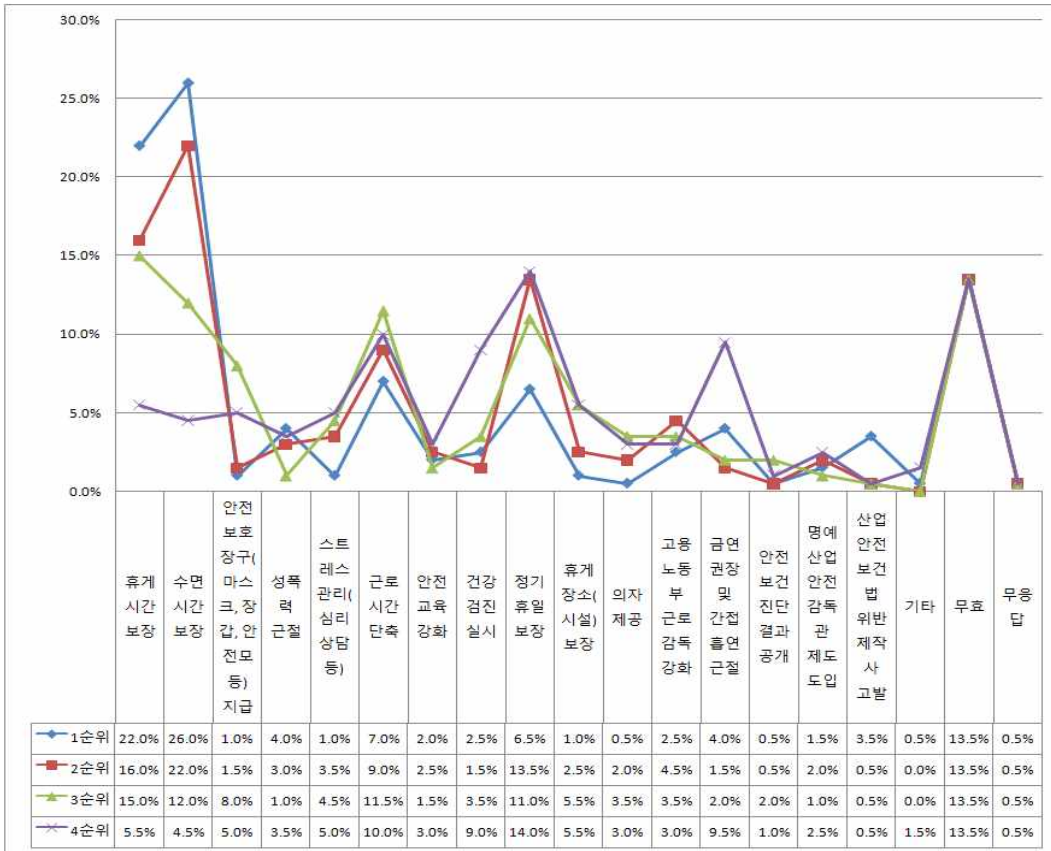


[감당하기 힘든 양의 일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응답 비율(%)]



업무수행 기간의 준수 및 빠른 업무처리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로 휴게시간 보장, 수면시간 보장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영화종사자 건강보호 및 영화 현장 안전개선을 위한 과제 선호도 전체 비율(%)]



2. 영화 제작 현장의 산업재해

영화노조가 설립된 이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에 초점을 맞췄다. 일하다 다쳤음에도 병원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공상으로 처리되었다. 90년대 중반 무렵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제작 현장별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고 상해보험을 통해 현장의 사고를 처리했으며 대부분의 스태프는 상해보험의 내용도 알지 못했다. 한편 대개의 스태프들은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잘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 일하다 다치는 일은 숙련되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도급 계약 구두계약이 관행이던 시절은 팀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기도 하였다.

산재 인정 과정의 첫 번째는 계약서의 확인이었다. 10여 년 전의 현장은 근로계약은커녕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례들이 비일비재했기에 산재 인정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금처럼 근로기준법 적용 및 근로계약이 보편화되기 전의 현장은 용역계약형식이었고 용역계약의 형식이라 할지라도 고용된 상황임을 입증해야 했다. 영화 현장의 경우 오랫동안 도제의 관행으로 인해 조수급 스태프의 고용 책임을 해당 부서의 감독급 스태프들에게 지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감독급 스태프 역시 제작사에 고용된 상황임을 확인시켜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에도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계약서와 관계없이 계약의 실질을 판단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산재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는 대부분 계약서로 인해 판단되었다.

2016년 현장에서 의상팀으로 일하던 스태프가 촬영 전 준비업무를 하는 도중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산재진행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당시 해당 스태프는 제작사와 근로계약 체결 전으로 촬영 준비를 위한 업무상 사고로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고 당시 제작사에 고용되어 일한 것이 아닌 제작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의상실장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결정서에서 불승인 처분 취소의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사고 당시 업무 내용은 이후 진행된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확인되고, 영화 제작의 특성상 촬영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인 점, 해당 스태프는 촬영 전 준비기간에 사고를 당한 점 등을 들어 형식상의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발생하였을 뿐, 실제로는 제작사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영화 현장의 산재보험 적용 이후의 문제

<2019년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4%가 촬영 중 사고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최근의 현장은 4대보험 적용으로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나 산재처리 진행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영화 현장의 드러나지 않은 일하다 다치는 상황은 더 많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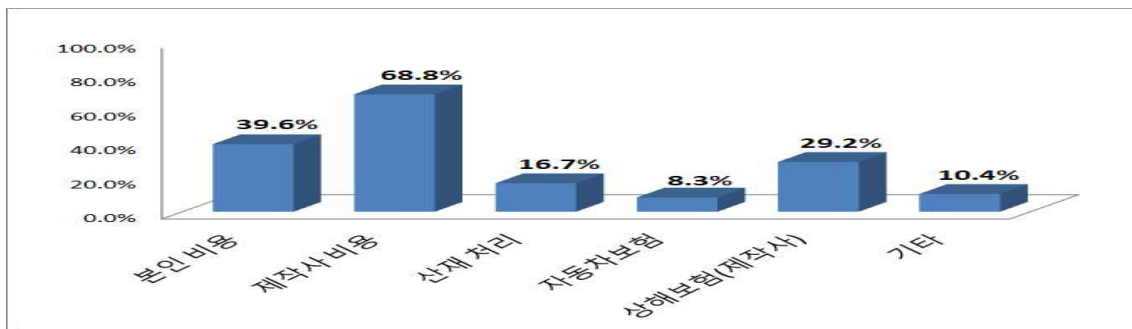
[산업재해 발생시 후속조치(단위: %)]²⁾

구분	산재보험	제작사비용	사업주 민간보험	개인비용	개인보험	기타
2009년	10.98	14.45	56.36	9.54	5.2	3.47
2012년	9.3	19	47	10.6	6.2	7.9
2014년	16.8	24.9	24.0	5.1	8.4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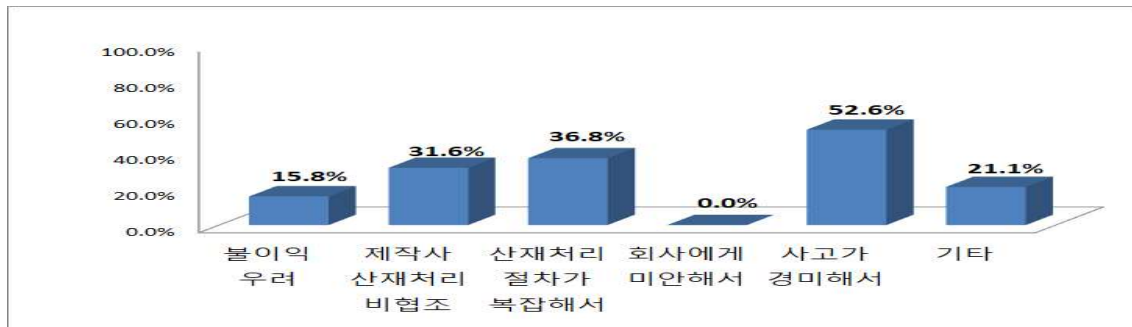
2) <2018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영화진흥위원회 공정한경조성센터) 중

2016년	32.6	25.7	19.9	3.8	4.2	13.8
2018년	16.1	16.1	45.2	2.8	2.8	17.0

[재해사고 처리 방식(%)]



[재해사고를 본인 비용으로 처리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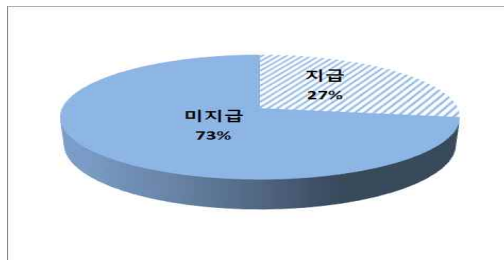


한 편의 영화가 관객에 의해 소비되는 것이기에 여론을 신경 쓰게 되고 산재의 현장으로 영화가 드러나는 일은 조심하게 되는 제작사의 태도 등이 스태프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약 68%의 스태프는 산재처리에 대한 의사가 있음에도 여러 제반 사정에 의해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현장에서도 일하다 다치는 상황에서 산재처리는 일을 크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부담을 느낀 스태프는 병가 및 연차 등 쉬는 것이 가능한지 정도를 문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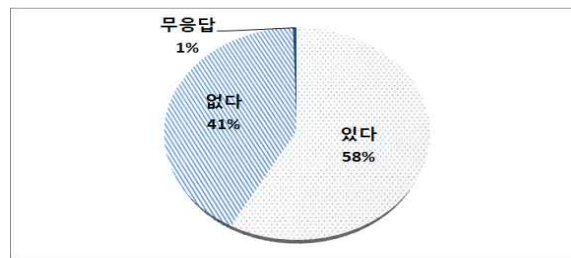
3. 영화 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

근로계약이 확산되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일반화되면서 성희롱예방교육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9. 폭파씬(Scene)과 차량씬(Scene)에서의 보호구 지급 여부(%)]



[2019. 안전교육 수강 여부(%)]



안전교육을 받은 응답자 중 57.3%가 안전교육으로 인해 ‘현장 내 안전사고가 감소하였다’고 답변하여 현장에 안전을 주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촬영 전 1회로 한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응답자의 87%가 답변하였다. 현장의 위험은 촬영되는 장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촬영 전 안전회의 등을 통해 현장에 안전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캐나다 등 미주 지역의 경우 영화산업 진입 전 의무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촬영현장에 맞는 구체적인 안전가이드도 마련하여 공지하고 있다. 또한 매일 촬영 전 ‘안전미팅(safety

meeting)’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회의 시간도 그날의 촬영분량 등 업무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콜시트(Call Sheet: 일일촬영계획표)’를 통해 고지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고 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을 달리 하고 있다. 한편 영화를 위한 고용은 촬영이 임박해서 이루어지고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확인이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으로 구분하고 있어 프로젝트별로 ‘사업’이 운영되는 영화산업의 경우에도 건설 사례와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비 규모’로 산안법 적용 범위의 보완이 필요하다.

2019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편당 평균 총 제작비는 29억이며 제작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미만 115편, 10억이상~20억미만 19편, 20억이상~30억미만 3편, 30억이상~40억미만 4편, 40억이상~50억미만 4편, 50억이상~60억미만 8편, 60억이상~70억미만 5편, 70억이상~80억미만 4편, 80억이상~90억미만 5편, 90억이상~100억미만 6편, 100억이상 17편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예산 규모가 적을수록 산재처리 비율이 낮았고 이는 현장의 안전도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개봉된 영화 중 60%의 영화는 10억미만의 저예산 영화로 현장의 안전에 대한 사항 등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예산 규모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며 저예산 영화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등 정부의 산업안전을 위한 역할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사에서도 나타나듯 안전교육의 효과는 확인되고 있어 저예산 영화라 할지라도 일을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방송스태프 산재실태

김기영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방송스태프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흔히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5~60명가량이 모여 야외에서 드라마를 촬영하거나 세트장 안에서 시간에 쫓겨 촬영하는 드라마 스태프들의 모습, 그리고 6mm 카메라나 DSLR 카메라를 들고 산과 들을 누비고 시장에서 인파를 헤치며 촬영하는 교양/예능 피디 및 촬영감독들의 모습, 그리고 밤새 일하다 집에 가서까지 자료를 찾고 원고를 쓰며 섭외를 하는 작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그런 스태프들의 모습은 대부분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방송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이기에 방송사는 쉽게 사람을 쓰고 버릴 수 있고, 인건비도 방송사와 제작사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으며, 스태프들이 일하다 다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종종 토크 프로그램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예전 드라마 촬영할 때 힘들었던 얘기들을 합니다. 최근에도 송윤아 씨가 MBC 드라마 '마마'를 촬영하며 오토바이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던 얘기를 하셨죠. 더 오래전에는 신화의 에릭 씨가 역시 MBC 드라마 '늑대' 촬영 중 교통사고가 났었고요. 지진희 씨도 SBS '끝에서 두 번째 사랑'을 촬영하다 코를 다쳐 방송 일정이 늦춰진 적이 있지요. 명절 때마다 이슈가 되는 아이돌스타 육상선수권대회에선 매년 누군가가 다칩니다. 배우 이승기, 고아라, 신세경, 이준기 씨 등 톱스타들도 종종 다쳐서 마스크를 타곤 합니다. 그리고 부상 투혼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스태프들의 부상은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 SBS '펜트하우스'에서 안전거리 확보도 없고 리허설도 안 한 채 차량을 인도로 돌진시켜 스태프 5명이 골절 등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현장에서 소품에 기름을 과하게 부어 생긴 화재로 2명이 부상당했구요. OCN '본대로 말하라' 촬영 현장에서는 차량 추격신을 촬영하는데 슈팅카라고 부르는 차량 앞부분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케이지에 스태프들을 태우고 촬영하다 슈팅카가 앞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슈팅카 케이지에 타고 있던 스태프들이 말 그대로 날아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분은 차와 차 사이에 끼서 척추뼈들이 골절되어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TVN '화유기'에선 미술스태프가 세트장 천장의 샹들리에 작업을 하다 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는 폭염에도 연이어 촬영을 한 후 집에서 스태프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고요. JTBC '하녀들'은 세트장에서 난 화재로 스태프가 숨진 적이 있고, '꽃들의 전쟁'과 '달래 된.장국'에서는 스태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EBS 다큐를 촬영하던 독립피디인 고 박환성, 고 김광일 피디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현지 코디나 운전기사도 없이 본인들이 촬영하고 또 운전도 하면서 이동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충돌로 사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그나마 심각해서 기사화가 된 내용들입니다. 운이 좋아서, 그리 크게 다치지 않아서, 소규모 현장에서 다쳐서 조용히 묻힌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혼자 장비를 짊어지고 산을 헤매며 촬영하다 다친 수많은 독립피디들, 밤샘편집과 촬영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일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당하는 스태프들, 역시 장시간 노동으로 목과 허리를 쉬게 할 틈도 없는 작가들의 얘기는 잘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산재사망률은 일일 2.3명이라고 합니다. 매일 2명 이상이 꼬박꼬박 일하다 죽는다는 뜻이지요. 2018년에는 1년 동안 971명이, 거의 천 명 가까이 일하다 죽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통계도 역시 산재로 인정받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람이 다쳐도 산재로 인정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앰블런스도 돌려보내고 일반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 또는 아예 해고를 협박수단으로 삼아 산재신청을 못 하게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구던 택배노동자 분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도 있었지요. 그런 통계에 비하면 방송계에서의 산재는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위에 거론한 스태프들의 사망과 부상은, 전부 산재가 아닙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제작사가 들어놓은 상해보험으로 치료비나 보상비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산재보험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가 2020년 올해 조사한 설문조사들에 따르면 일하다 다칠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는 답변이 교양/예능은 12.6%, 그리고 드라마는 26.4%에 불과합니다. 사실 상해보험과 산재보험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실제 비율을 더 낮을 거라고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본인 자비로 처리한다는 답변이 양쪽 다 20%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방송이나 영화는 종합예술이라는 말이 있지요. 다양한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뜻도 있습니다. 방송계에서의 사업주, 진짜 사장은 방송사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계의 많은 회사와 같이, 어떻게든 그 책임을 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송사는 현장에서 일하다 스태프가 다쳐도 나 몰라라 하고, 제작사도 생색낼 정도만 책임을 지곤 드라마나 프로그램이 끝나면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친 스태프는 그 후유증을 평생 안고 가야 하겠죠. 만약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려면, 방송계를 떠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실 방송계의 산재사고 및 보상 문제, 비정규직 문제, 갑질 문제 등은 결국 하나의 이슈로 귀결됩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의 수많은 산재사고와 노동문제가 결국은 사고처리비용이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방송계의 수많은 문제도 그게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갈수록 더 낮은 단가로 더 높은 퀄리티를 뽑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쥐어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작비가 부족하니 일하는 날수를 줄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 매번 스케줄에 쫓기고 밤을 새고, 잠을 제대로 자거나 쉴 수 없으니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끝난 촬영 후 쉬지도 못하고 아침에 할 촬영을 준비하다가 사고가 나고, 제대로 된 장비는 비싸니 차 앞에 사람을 태워 박진감 넘치는 차량 추격신을 찍다가 사고가 나고, 시간도 없는데 별일 있겠어 하면서 리허설도 없이 촬영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6~7명이 해야 할 일을 인건비가 없으니 3~4명이 하게 하다가 사고가 나고, 그렇게 사고가 나도 방송사나 제작사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조용히 덮고 인력 교체해도 괜찮았으니까요.

그래서 방송계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드라마 1회당 몇억씩 받아가는 톱스타들이나 스타작가들에게는 아무 말 못 하면서, 춥고 더운 현장에서 잠도 못 자며 일하는 힘 없는 스태프들 인건비만 계속 줄이려고 하는 방송사에, 더 이상 그럴 수 없다고,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송계에서 일하는 스태프들, 프리랜서 비정규직 방송노동자들은 쓰다가 버리는 부품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방송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강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계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그 어떤 곳에서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일하다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참고1) 교양예능 노동실태 설문조사 보고서

※ 참고2) 드라마스태프 노동실태 긴급 설문조사 보고서

방송작가 산업재해 실태

김한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

1. 방송작가들 노동 현실

(1) 불안정한 고용 형태

고용 형태를 보면 93.4%가 프리랜서, 6.4%가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로 단 1명 정규직을 제외한 대상 작가 579명이 비정규직. 계약 형태를 보면 74.8%가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고, 서면계약을 체결한 작가는 총 25.2%.³⁾

(2) 긴 노동시간과 불규칙한 노동시간

방송작가들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6일(35.0%). 7일도 28.7%.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10시간 이내(32.4%).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는 작가는 8.7%에 불과. 10~12시간 이내(28.9%), 12~14시간 이내(12.9%) 등. 18~20시간 이내(3.2%)와 20시간 이상(3.2%)의 초고강도 업무를 소화하는 방송작가들도 존재. 가장 바쁠 때의 일주일 노동시간은 평균 75.2시간. 1회 최장 노동시간은 평균 25.8시간. 불규칙한 노동 일상적.⁴⁾ 업무 시간과 쉼의 경계가 모호.

(3) 잦은 밤샘 및 야간작업

생방송 프로그램이나 아침 방송 등 특성상 밤샘 작업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프로그램들 존재.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2~3일씩. 꼭 생방송, 아침 방송이 아니더라도 온에어가 임박한 방송의 경우 밤샘이나 야간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방송계의 관행 및 구조. 아침 생방송의 경우 새벽 3~4시경 출근하는 스케줄. 야간작업 생활화.

3) 2019 방송작가 노동 실태조사, 방송작가유니온. 총 응답자수 580명.

4) 2019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총 응답자수 380명.

2. 방송작가들의 업무와 연결되는 질병·부상

방송작가들의 업무는 대부분 노트북 앞에서 이뤄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일하는 작가들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근골격계 질환. 손목 통증의 경우 대부분의 작가들이 한 번씩 겪게 되는 질환이며 허리, 목 디스크와 손목 터널증후군으로 심해지기도. 잦은 밤샘과 야간작업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심장 빨리 뛸, 고혈압 등)과 호르몬 불균형 질환(생리불순, 자궁 질환, 유방 질환 등)에 시달리는 작가들 다수. 일과 쉼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특성과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한 불안장애와 같은 심리 장애를 호소하는 작가들도 다수. 이외에 야외에서 진행되는 촬영이나 세트장 스튜디오에서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도.

※ 2020년 10월 방송작가 건강검진 담당의 코멘트 (현장 보강 예정)

3. 방송작가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 대처 실태

방송작가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이 낮았지만,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미가입 비율 98.5%로 가장 높았음. (국민연금 미가입 83.5%, 건강보험 지역가입 22.8%, 다른 가족 통해 가입 75.8%, 고용보험 미가입 98%)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에 대해서 '직장가입은 되지 않고 예술인복지법을 통한 가입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7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10%의 가장 다수를 차지한 답변은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었음.

641명 응답자 중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방송작가(412명)만을 대상으로 '전액 개인비용으로 치료' 했다는 응답이 무려 88.8%(366명).⁵⁾

산재보험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는 616명 응답자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8%(480명)로 다수 차지. 산재 가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짐.

4. 방송작가 A의 사례

5) 2016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보고서, 방송작가유니온.

19년차 방송작가A. 지난해 봄 100쪽이 넘는 프리뷰, 100장이 넘는 원고를 썼던 작가는 이후 왼팔에 힘이 빠져 물건을 들 수 없었고 문서 작업을 하면 오탈자가 부지기수로 발생. 정형외과에서 염좌 등 진단을 받았으나 산재 가입 이전에 질병이 발생해 해당 질환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었던 해당 작가는 산재 가입 전에도 이후에도 꾸준히 발생할 것이 명백해보이는 작가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라면 산업재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 아래 지난해 10월, 한 일터와 계약서 작성 이후 산재보험 가입.

공단에서는 방송작가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를 요구.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어떤 강도로 일하는지 등을 자료로 남기라는 것. 하지만 단순히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방송작가의 업무 강도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문제. 때로는 일주일 중 잠드는 시간을 빼 모든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오가며 길 위에서 섭외 전화를 해야 하는 경우도 수두룩한 것이 방송작가의 업무. 게다가 해당 공단 담당자에게 방송작가의 업무를 이해시키는 것도 벅찬 과제. 산재 신청이 쉬워졌다는 티브이 홍보는 있지만 처음 신청하는 서류만 간단해졌을 뿐 그 내용은 전혀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산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아쉬움. 원고와 프리뷰 노트 등 200쪽이 넘는 인쇄물을 보내고 의사 소견서와 CT 영상 등을 보내놓고 기다렸지만 결국 승인받지 못함.

5. 현 방송작가 산재보험 문제점

(1) 노동자로서가 아닌, 중소기업사업주로서의 가입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 시행 및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음.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가입 대행하고 있음. 하지만 원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방식이며, 노동자로서 가입이 아닌 중소기업사업주로서 가입. 산재 보험료를 노동자가 직접 내야 한다는 점.

(2) 가입의 장벽

서면계약서가 필요한데 현재 70% 넘는 작가들이 구두로 일을 하고 있어서 서면 계약으로 본인의 노무를 증명할 수 없다는 문제. 작가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예술인복지법을 통한 가입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

(3) 산재 인정의 어려움 - 작가 B의 사례

산재처리를 받지 못했던 작가 B의 사례. 기존에 방송작가들이 산재 신청을 한 경우가 없다 보니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심의하는 이들이 방송작가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섭외, 취재, 원고 등 작가의 롤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실제 어느 정도의 노동 강도를 갖는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보였다고 함. 산재 신청 과정에서 느낀 부분.

4. 마무리

방송작가들이 겪고 있는 질병의 강도와 빈도수에 비해 산재 가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쉬운 대로 작가들을 대상으로 현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 제공,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송작가들에게도 자영업자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산업재해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 산업재해라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일을 하다가 다친 노동자의 치료비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마땅. 고용보험에 이어 방송작가 및 예술인들에게 실효적인 산재보험 제도가 필요.

출판계 재직/외주 노동 산재실태

김원중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사무국장)

출판계 재직/외주 노동 산재실태 사무직에도 산재가 있냐구요? 우리도 아파요.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 50개 사업장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 의심자 전체 평균비율 51.4% / 사무직 70%"

사무직의 경우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환경에서는 정적 피로가 쌓인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결과도 가져오면서 젖산의 빠른 축적으로 피로감을 빠르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김철홍 교수는 '컴퓨터 쓰는 사무직, 가장 무서운 작업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출판계 외주노동자들은 계약서 없이 일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낮은 외주단가, 불리한 지급방식, 지급일 미설정 등으로 부당함을 호소한다. 지급이 밀리거나 거부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때에 맞는 치료를 받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주노동자들의 81.7%가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겪은 적이 없다는 비율은 남성이 76.9%, 여성은 58.6%로 여성이 더 많은 비율로 질병을 얻는다. 직무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많은 영업/마케팅 분야가 산재처리가 용이한 질병이나 부상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성이 많은 편집/기획/디자인 분야에 서는 산재처리가 어려웠을 것이다. 여성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 등 산재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업무상으로 얻은 질병임에도 회사나 고용주에 알리기가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간 밀어내기가 만든 위태로운 풍경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월별로 일정한 매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간을 만들고, 서점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출판노동자들은 좋은 책을 만들기보다 빠르게 더 많은 종 수의 책을 만들어내야 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출판노동 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시간외근로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무리한 출간 일정'을 꼽은 경우가 4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8.6%가 과도한 잡무, 19%가 비효율적 업무 시스템을 꼽았다.

일명 '신간 밀어내기'로 인한 장시간의 연장, 마감 노동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여 출판노동자들은 위장질환, 어깨와 허리 등의 근골격계 질환, 정신 질환, 중증 질환 등을 앓고 있다. 재직 노동자의 경우 초과노동으로 인한 운동시간 부족, 외주노동자의 경우는 불규칙한 생활리듬과 노동강도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외주출판노동자 노동실태 연구보고서 (2013)에 따르면, 마감 일정을 위해 1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81.1%, 그 가운데 12~14시간 근무는 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응답자 가운데 59.7%는 한 달 중 5~7일 또는 그 이상을 잠을 포기한 채 일을 한다.

일하다가, 늦잠 자고 막 퍼져 있거나. 식사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아프더라고요. 위염, 식도염 같은 거 생기고. 다리 운동 잘 못 하니까. 앉아 있는 자세로 하고.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집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연골연화증 이런 것도 생겨나고. (외주 디자이너 사례)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그게 약간 허리에... 운동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회사 건물이 햇볕이 잘 안 들어와요. 파주가 추우니까 보온 하나만 생각을 해서 엄청 외벽을 두 겹게 하고 창문을 조금만 만든 거예요. 외풍 들어오고 이러니까. 햇볕을 많이 못 쬐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감기 한 번 들면 다 감기 걸리고. (재직 마케터 사례)

병원 하나 없는 출판도시

파주 출판도시의 경우 남북으로 3km 이상 길게 늘어서 있고, 수백 개 회사가 입주해 있지만 '약국' 하나 생기는 데 13년이 걸렸다. 아직까지도 병원은 없다. 국비지원을 받아 건립될 파주 출판문화센터(가칭)에도 간단한 '의무실' 설치 계획조차 없다. 파주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았지만, 용도 변경 등 서류나 절차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응답만 있었다. 입주기업협의회를 비롯한 사용자와 지자체에서 과연 '노동자의 복지'를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생리휴가 쓰는 사람 있나요?

출판노동 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생리휴가를 쓸 수 없다고 대답한 노동자가 47.9%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인 출판업계에 ‘생리휴가’를 보장하고 있거나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곳은 드물다. 쓸 수 없는 이유로 ‘사용자나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68.8%였다. 생리통을 무턱대고 참다가 자궁근종을 비롯한 질환들을 키우는 경우도 생겨난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요.

과중한 업무량과 부담, 쉼의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 등은 정신건강을 해치는 원인이다. ‘스트레스’의 수준을 넘어서 우울증과 불안증 등을 유발하는 배경에는 업무의 압박이 있었다.

업무시간 외에도 이어지는 ‘카톡’ 업무지시, 편집자들의 경우에는 지역자들로부터 연락과 압박도 이어진다. 외주노동자들의 경우 주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까지 ‘관행’이라며 떠맡겨버리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업무를 분리할 수 없는, 업무랑 나를 분리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연도 많았지만, 그거 때문에 사실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가끔 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만됐죠.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편집자)

일정을 조정해주는 것이 사장의 역할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정은 하나도 양보 안 하면서 완성도는 높여야 된다. 밤을 새우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싫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편집자)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파주 출판단지 노동환경 개선

병원, 의무실 등 의료시설 설치 요구

노정교섭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5인 미만, 외주, 여성 노동자)

경기도-파주시 노동인권청정구역 사업

출판 외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표준계약서 마련

외주 단가 현실화

'예술인복지법'상 출판 외주노동 포함, 고용보험 등 권리보장

※ 아래 자료를 주로 인용,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연구자, 참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3 외주출판노동자 노동실태 연구보고서>, 외주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사업단.

<2015 출판노동 실태조사 보고서 - 2014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노조 출판노동조합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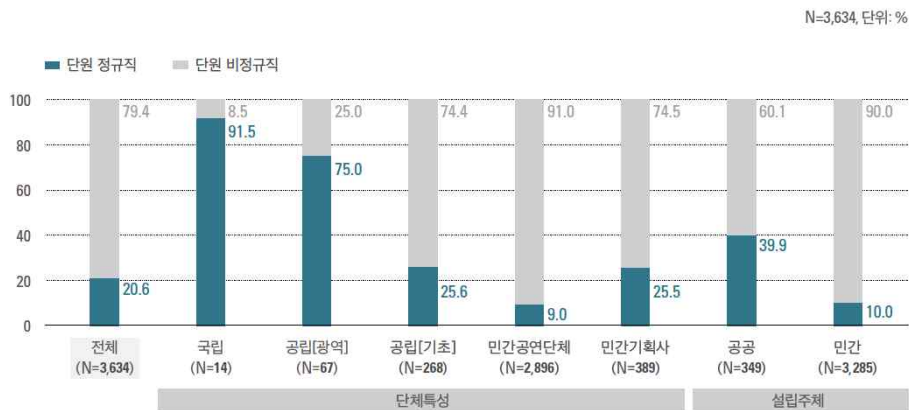
<숨은 노동 일러두기 2018 출판산업 여성노동 실태조사>, 언론노조 출판노동조합협의회 여성위원회.

공연분야 산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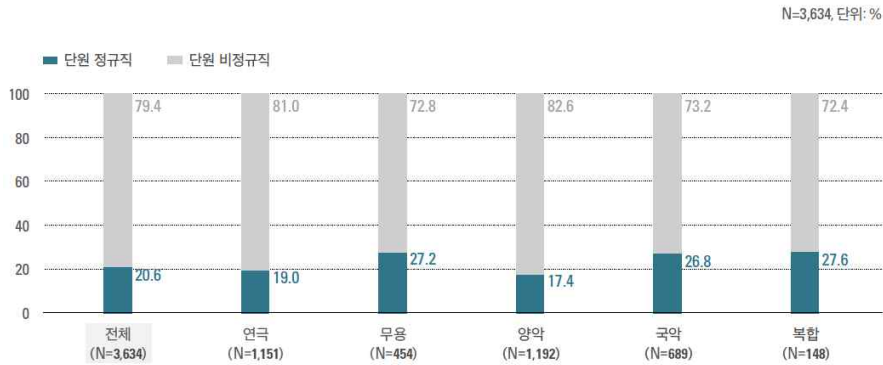
임인자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조합원·공공극장안전대책추구연극인모임)

79.4%의 비정규직 고용형태, 비정규직도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예술가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2018년 기준)’에서 조사된 단체특성별로 단위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국립 단체와 공립(광역)단체의 정규직 단위 비율은 각각 91.5%와 75%였으며, 민간공연단체에서는 비정규직 단위의 비율이 91.0%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국공립단체 및 민간단체를 포함하면 20.6%가 정규직이고, 79.4%가 비정규직 형태였다.



[표] 공연단체 특성별 공연형태별 단위비율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2018년 기준)」)



[표] 공연단체 주요활동 장르별 고용형태별 단원 비율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2018년)」)

이와 같이 79.4%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단체로 운영되지 않는 프로젝트형 작품 형식의 고용형태는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어렵다. 또한 국공립단체 중에 정규직, 비정규직에도 포함되지 않는 단원들에 대해서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그 실태조차 알 수 없다.

광주시립극단의 경우 4~6명의 정규직 단원 이외에 작품별 단원제 형식으로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지만, 이들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르면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구분 가운데,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비정규직도 아닌 그 어떤 지위도 가지지 못한 채 아무런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단원’이라는 주장이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개선을 하고 있지 않다.

【한겨레 2020.11.18.】 “우리는 유령단원”…광주시립극단 객원단원의 호소

광주광역시 운영하 광주시립극단 객원단원들이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광주시립극단이 기획한 연극에 참여하던 중 갑질 성희롱 피해를 봤지만 광주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시립극단은 2012년 24년 만에 재창단하며 예술인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작품별 단원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매년 작품을 무대에 올릴 때마다 공개경쟁을 통해 객원단원을 단기 고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객원단원들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가 정한 단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정원의 범위에서 상임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한다’고 나와 있을 뿐 객원단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객원단원들은 이 때문에 공연 준비 중 다치거나 상임단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당해도 적

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립극단이 올해 8월 공연한 연극 <전우치>에 참여했던 일부 객원배우와 조연출은 17일 광주광역시 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섭 시장은 <전우치> 참여 조연출과 배우들에 대해 조례에 명시된 비상임단원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70480.html#csidx52b7e0f9739972aab10f47bcc9f2ef8>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게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근로자성과 사용종속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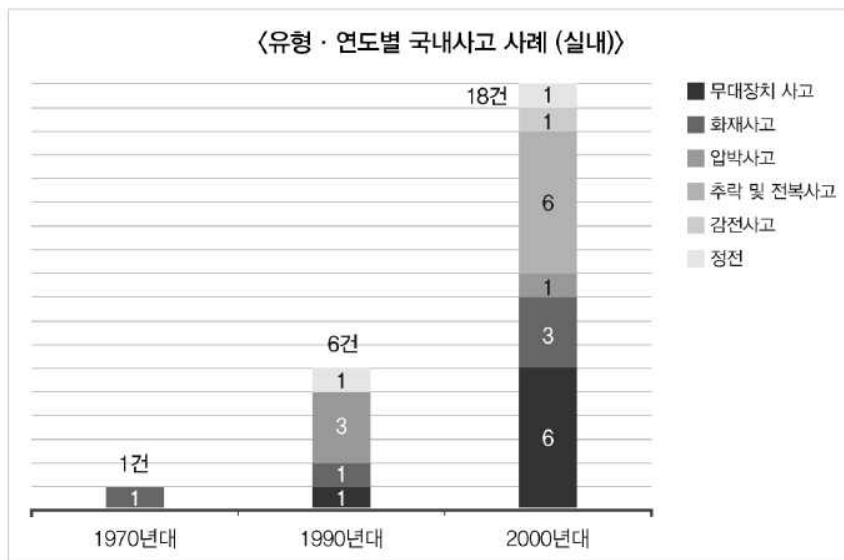
예술인의 창의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닌데, 그동안 예술인의 창의성은 자유로운 예술활동으로 인식되어 마치 아무런 관리나 통제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의 지위로 예술인의 경제적 지위를 귀결시키곤 했다. 예술인의 창의성은 노동과정에서 드러나는 직업적 특성이며, 예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예술인은 마치 다른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즉, 일반적인 제조업 공장제 노동과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자 지위가 박탈되어선 안 될 것인데, 그동안 예술의 창의성은 그 부정의 징표로 작동된 것이다. 특히 계속적인 계약의 형태가 아닌 단속적인 계약은 프로젝트형 고용의 전형적인 특성임에도 이러한 특수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⁶⁾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있어 몇 가지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팀으로 작업하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용품구입비용 부담 정도, 업무대체성의 여부, 출퇴근 규제 등을 생각할 때, 광주시립극단의 객원단원들의 노동자성을 조속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고용형태가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예술인권리보장법 등의 예술인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한 성희롱, 직장 내 갑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관계에 의한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 현행법상 불법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보호받을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무대라는 위험한 작업장에서 가장 취약한 고용형태의 예술가들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예술가의 노동자성 인정과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고 박송희님을 통해 본 무대안전사고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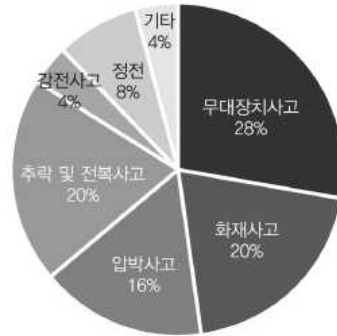
- 공연은 “전부 도급”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위험의 외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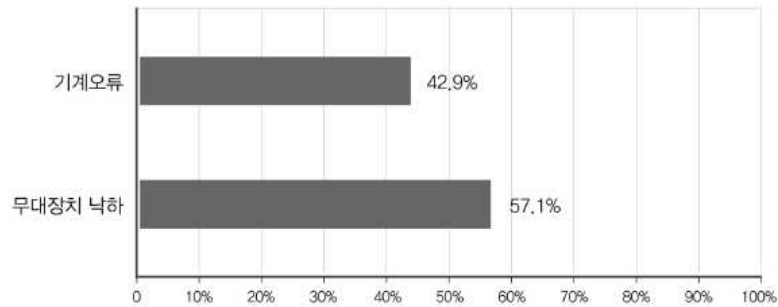
<그림> 연도별 국내사고 사례, 「공연관객위기대응 및 관리 매뉴얼 2017년 10월」 중

6) 김현호, 뮤지컬 〈친정엄마〉 소액체당금 지급 사례로 알아본 예술인의 근로자성
<http://news.kawf.kr/?searchVol=43&subPage=02&searchCate=03>

〈유형별 국내공연장 사고(실내)〉



〈무대장치 사고 원인 분석〉



<그림> 유형별 국내공연장 사고 , 「공연관객위기대응 및 관리 매뉴얼 2017년 10월」 중

<사건의 개요>

-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일환으로 김천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호남오페라단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공동주관하여 창작극 ‘달하, 비취시오라’ 공연이 2018년 9월 7일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음.

- 2018년 9월 7일 공연예정인 ‘달하, 비취시오라’의 공연을 위한 셋업 작업이 9월 5일부터 진행되었는데, 호남오페라단 ‘달하, 비취시오라’의 조연출로 참여한 피해자 고 박송희님은 무대감독의 요청에 의해(가) 9월 6일 13:10경 김천시문화예술회관 3층 대공연장에서 무대 위에 있는 세트를 붓으로 색칠하여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

- 이때 호남오페라단 무대감독 홍○○은 무대 아래에 있는 세트 및 무대장비를 무대 위로 올리기 위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송○○ 무대감독에게 무대 중간 바닥에 설치된 리프트를 1층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송○○ 무대감독은 김천시문화예술회관 기계감독 임○○에게 기계실로 가서 버튼을 이용해 리프트를 조작하여 무대 아래로 내릴 것을 요청하였음.

- 13:18경 무대 개구부 주변에서 피해자가 무대 세트 색칠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홍○○ 무대감독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고 계속 작업하도록 내버려 둔 채, 무대 개구부 주변에 안전간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송○○ 무대감독에게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송○○ 무대감독은 피해자 박송희님에게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은 상태로 무전으로 기계실에 있던 임○○ 기계감독에게 “(리프트를) 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임○○ 기계감독이 리프트를 조작하여 6.5m 아래로 내림으로써 무대 바닥면에 78㎡(가로 13m, 세로 6m) 크기의 개구부가 생기게 하고, 그때부터 13:23경까지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그 무렵 피해자 박송희님이 색칠 작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뒷걸음치다가 위 개구부로 빠져 6.5m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음.

- 이러한 추락으로 결국 박송희님은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2018년 9월 10일 오후 3시 경 사망하게 되었음.

<사건의 주요 경과>

- 2018. 9. 6. 고 박송희님 무대추락 사고 발생
- 2018. 9. 10. 고 박송희님 사망
- 2018. 9. 27. 청와대 청원
- 2019. 6. 2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김천시 불기소 처분.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감독 기소)
- 2020.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1심 판결 :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감독 유죄 판결
- 2020. 4. 21. 서울남부지법 민사 1심 판결 : (김천시 과실 80%, 본인 과실 20%)
- 현재 김천시에서 항소하여 2심 판결 진행중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

7) 호남오페라단이 가지고 온 무대 세트를 쓸 수 없다고 송○○ 무대감독이 수정 요청을 하여, 본래 예정에 없었던 무대 세트 수정작업이 무대 위에서 이루어졌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본래 무대 담당이 아닌 조연출이 무대 세트 수정을 위해 색칠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송○○ 무대감독, 호남오페라단 홍○○ 무대감독의 업무상 과실치사
 - 호남오페라단 홍○○ 무대감독은 리프트 하강 요청 시 안전조치 점검 등 추락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송○○ 무대감독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송○○ 무대감독이 안전교육 완료 서류 조작 지시
 - 박송희님이 무대로 추락한 이후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송○○ 무대감독은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하며, 남은 인원들을 모아 안전교육을 시행했다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였음.

- 1심 형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김천시가 불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함. 1심 재판부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이 이 사건 공연 진행에 대하여 사업주로 보았으며, 사업주인 김천시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함을 지적하였음.

- 무대 개구부에 아무런 안전장치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고장 난 상태로 방치
 - 무대 개구부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고, 경고등, 사이렌 등도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사고와 직결되었음.

- 사고 직후에야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 <공연법>상 500석 이상의 공연장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은 사고 발생 직후인 2018년 9월 7일에야 안전총괄책임자를 지정하였음.

[참고] 공연법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6.5.19]]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6.5.19]]

<사건 이후 문제점>

○ 이 사건은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발생하였지만, 해당 사업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 → 김천시문화예술회관으로 교부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이었음. 보조금관리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상 문체부, 문예위, 문예회관연합은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나 배상책임이 없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김천시 조례로 설립된 김천시문화예술회관만이 책임을 지는 구조임. 중대재해발생시 보조금 교부 기관의 연대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무대감독 개인과 공연단체에만 묻는 것으로, “위험의 외주화”임.

○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은 무대가 6.5m 높이에 있는 매우 특이하고 위험한 극장으로 현재 구조로 극장 운영을 지속할 시 사고 재발 위험이 높음.

○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거짓을 검찰이 인용하여 결국 김천시는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판에서 드러난 것은 거짓 서류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 공연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 다음 날부터라도 안전한 공연을 담보하기 위하여 진실한 자료제출이 요구되므로 자료제출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 사고 발생 2년이 지났지만, 김천시, 문체부, 문예위, 문예회관연합 등 관계 기관 중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한 적 없음.

○ 김천시는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으며, 형사 불기소 처분

됨. 민사 1심 재판에서 패소 후 유족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임. 김천시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함.

<종합적 검토>

2018년 ‘달하, 비취오시라’의 공연은 ‘2018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에서 계약, 안전교육, 보험 등의 모든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김천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와 호남오페라단이 공동주관하면서 이른바 공공기관인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이 모든 기관은 모든 책임을 공연단체에 맡긴 채, 연습, 셋업, 공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아무런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 박송희님은 구두로 계약했을 뿐,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못했고, 보험을 가입받지 못했으며,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다. 또한 고 박송희님은 자신이 맡은 조연출이라는 역할이 아닌 업무를 종용받아 결국 무대 세트를 수정하는 페인트칠을 하게 되었고, 무대 위에서 작업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고 박송희님의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 살피지 않았다.

고 박송희님은 조연출로서 또한 단기 비정규직 스태프로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서, 아무의 주의를 받지 못한 채 사고를 당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야 말았다. 그리고 그 책임자들은 “실족”이라든지, “경력미숙”이라든지 하는 이유를 들어 희생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적외선 CCTV의 밝기를 들어 그 당시 무대 위는 밝아 고 박송희님이 리프트 하강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대 위는 “밝기와 상관없이” 밝은 곳에서도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안전펜스와 경고등과 경고음이 울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2020년 9월에 발표한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의 공모요강에 보이는 몇 가지 사안은 2018년 이후 조금은 개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였고(이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으로 2020년 6월부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책임이기도 하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으로부터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된 보험을 필수 가입토록 하였으며, 셋업, 리허설, 공연 등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대비를 위해 현장 환경에 따라 안전교육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이 김천시를 불기소한 입장처럼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리·감독의 책임을 공연단체에만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안전한 창작 환경의 조건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 박송희님이 사망한 지 2주기가 지났다. 박송희님의 사망이 ‘사고’가 아닌 ‘사건’인 이유는 여기

에 있다. 2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김천시, 김천시문화예술회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엄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유다. 또한 지금이라도 검찰은 이 사건을 재조사해주시기를 촉구한다.

공연장은 공연자에게 “협조”하는 수동적인 위치나 장소가 아닌 안전을 관리·감독하여 예술가에게는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공공극장의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명약관화하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통해 예술가들의 모든 행위에서 공연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기관으로 귀결되어 버렸다. 이에 대한 재조사가 중요하다. 예술가는 공연장 없이, 공연장은 예술가 없이 공연을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다. 현재 무대안전진단의 경우 사람의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조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예: 경고등, 사이렌 등), 무대안전실태조사에서도 사람의 안전 분야는 누락되어 있으며, 공연예술인실태조사에서도 ‘안전’에 대한 분야는 누락되어 있다.

또한 많은 안전의 관리는 ‘공연’이라는 결과물을 중심에 두고 있다. ‘연습실’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미약하다. ‘연습실’은 공연자에게는 중요한 일터이다. 연습부터 공연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로 안전한 창작환경의 마련이 절실하다.

웹툰 · 웹소설 · 일러스트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의 산재실태

정화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조합원)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작가 등 창작노동자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이 재택 근무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유로운’ 직업, 그래서 편하고 안전하게 즐겁게 일할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사뭇 다른 점이 있기에 이렇게 발표할 자리가 있어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등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들의 산재실태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는 조합원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발표하는 저 또한 그러한데 보통 사람들의 인식으로 집이란 휴식의 공간으로 여겨지고, 저도 처음엔 그런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택근무를 매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이 재택근무라는 게 단순히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회사로 출퇴근 안 해도 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출퇴근시간까지 아껴서 일해야 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재를 시작하면 일어나서 일하고 밥먹고 일하고 밥먹고 자고 다시 일어나서 일하고... 그런 매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재택근무다 보니 집과 일터가 분리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쌓여도 작업실을 따로 마련할 만한 수입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작업실로 이동하는 그 시간이 아까워 자고 일어나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그냥 집에서 일하는 정도의 작업량이기 때문에 우리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등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이 노동량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신인작가여서 이제 1작품 완결했을 뿐인데 연재하며 매주 밤을 새우니 심리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공황상태가 되어 심장이 너무 뛰어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이 느끼는 불안장애가 생겼는데 당시엔 이게 정신장애인 줄 몰랐고 실제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과로사할

것 같으니 미리 유서를 써둬야 하나 고민했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지만 대중에게 작업이 즉각적으로 공개되는 직업이다 보니 마감엄수를 못하면 역량이 부족한 작가 소리를 듣고 커리어가 무너지고... 그런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웠기에 만약 죽는다면 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계속 진행했고 어떻게 완결은 냈지만 생명의 위협을 매주 마감하면서 겪었더니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생겨 2년 가까이 투병중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할 수 없이 요양하며 간단한 보조작가 업무만 수행하며 지내왔는데... 이게 유난히 제 작업속도가 느리고 몸이 약해서 생긴 일일까요?

지난 11월, 우리 전국여성노조에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만 30세였고요. 이번 발표 주제와 연관지어 소개할 만한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인용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의 체감 업무 강도는 '힘들다'가 78.6%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차례로 과도한 노동량(37%), 결과물의 질 유지(23.4%), 낮은 단가(23.2%)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과도한 노동량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결과물의 질 유지를 위해 많이 일해야 하고, 단가가 낮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이 일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2.5시간(웹툰 59시간, 웹소설 35.4시간, 일러스트 40.1시간)이며 심야·새벽노동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작업량이 많아서 철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웹소설과 일러스트는 주당 노동시간이 웹툰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오나, 이 두 직군의 업무 강도가 힘든 이유는 '낮은 단가'가 1위를 차지하기에 생계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해내야 하거나 부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 과로와 산업재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업무로 인한 질병 경험도 살펴보았더니 경험자가 50%를 넘는 것만 차례로 나열하자면 두통·눈의 피로(82.5%) > 어깨·목·팔 등 근육통(76.8%) > 요통(허리)(64.9%) > 전신피로(62.5%) > 수면장애(57.5%) > 복통(위장·소화장애)(52.6%) > 우울증(52.3%)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플랫폼기반 청년 노동자 실태조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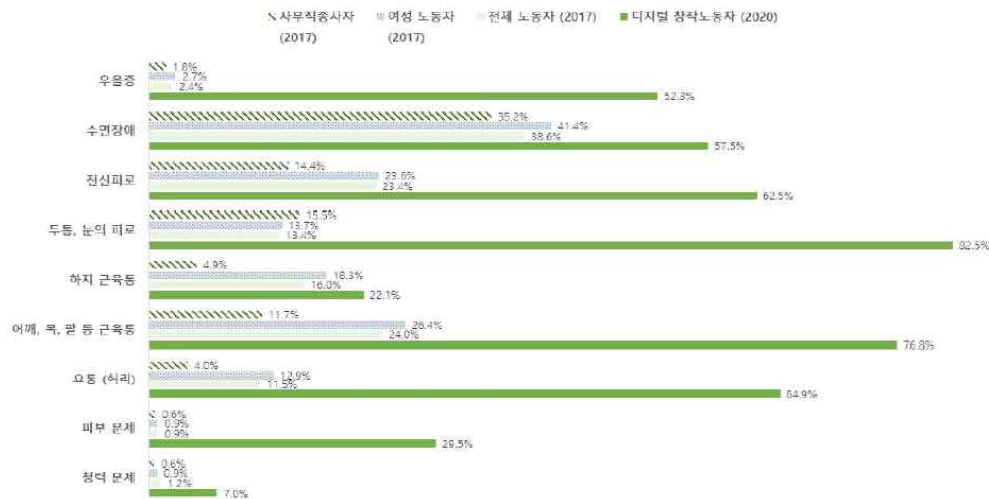
지난 1년 업무로 인한 질병 경험

		청력 문제	피부 문제	요통 (허리)	어깨, 목, 팔 등 근육통	하지 근육통	두통, 눈의 피로	복통 (위장, 소화장애)	건초염	전신피로	수면장애	우울증	기타*
활동 분야 (A)	웹툰	7.6%	31.1%	60.9%	73.3%	20.0%	75.6%	51.1%	32.0%	58.7%	54.2%	48.4%	10.7%
	웹소설	0.0%	14.3%	51.4%	48.6%	20.0%	62.9%	45.7%	22.9%	54.3%	51.4%	42.9%	2.9%
	일러스트	5.0%	10.0%	42.5%	55.0%	10.0%	57.5%	20.0%	12.5%	27.5%	25.0%	35.0%	7.5%
	기타	3.2%	16.1%	41.9%	48.4%	22.6%	64.5%	35.5%	22.6%	51.6%	45.2%	35.5%	3.2%
활동 분야 (B)	웹툰, 출판만화	7.2%	31.1%	60.0%	72.3%	20.0%	75.7%	49.8%	31.5%	58.7%	54.0%	48.5%	10.2%
	웹소설, 시나리오 및 스토리	2.0%	14.0%	50.0%	48.0%	20.0%	64.0%	48.0%	22.0%	52.0%	50.0%	42.0%	4.0%
	일러스트	4.5%	9.1%	43.2%	54.5%	13.6%	56.8%	20.5%	13.6%	31.8%	27.3%	31.8%	6.8%
조합원 여부	조합원	5.1%	25.4%	60.2%	73.7%	16.9%	83.1%	58.5%	37.3%	63.6%	56.8%	52.5%	11.0%
	비조합원	8.4%	32.3%	68.3%	79.0%	25.7%	82.0%	48.5%	28.7%	61.7%	58.1%	52.1%	9.6%
전체		7.0%	29.5%	64.9%	76.8%	22.1%	82.5%	52.6%	32.3%	62.5%	57.5%	52.3%	10.2%

* 기타: 생리불순, 호르몬대사 및 면역대사, 불안 및 공황장애, 하혈, 변비, 항문질환, 암, 탈모, 비만, 자율신경계 이상, 근육감소, 영양실조 등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님 발제문 중 2017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결과와 본 조사결과를 비교하신 내용을 발췌하면,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한국 전체 노동자 평균의 최소 2배 이상의 질병 경험이 있음이 조사되어 전체 노동자 평균에 비해 질병 경험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조] 지난 1년 질병경험 비교: 디지털 창작노동자, 사무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전체노동자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2017), 전국여성노동조합 플랫폼기반 청년 노동자 실태조사(2020)

* 수면장애: 근로환경조사(2017) Q.63 지난 12개월 동안 수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A. 잠들기가 어려움 △매일, △한주에 여러 번, △한 달에 여러 번, △드물게를 합산한 값임

** 디지털 창작노동자(2020)는 '업무로 인한 질병'이고, 전체노동자(2017)는 업무 외, 업무로 인한 질병 경험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이 연구결과를 보고 지회 총회는 종합병원에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일해야 마감이 가능하기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선 본인의 선택이 아닌 업체의 강제로 인해 제한된 시간에 마감해야 하는 '연재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현재 웹툰은 65컷 기준 주간연재가 통상적인데, 1컷 그리는데 최소 1시간. 그러니 65컷 그리다면 일주일에 65시간. 여기까지 작화시간이고 스토리 짜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웹소설은 5,500자 기준 2~3일 주기 연재가 평균으로 이야기되나, 웹소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일 연재, 7일(매일) 연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5,500자는 A4용지 기준 4~5장을 채워야 하는 양인데 그냥 사실적시 하는 이 발표문을 쓰는 데도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창작을 해야 하는 쪽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아득합니다. 이렇게 자주 연재해야 독자 수가 유지된다며 웹소설은 자주 연재할 것을 권장하고, 웹툰의 경우 50화까지 휴재금지를 조건으로 계

약하는 플랫폼도 존재하는 상황이라 제가 알기론 1곳밖에 없는 추석에 패널티 없이 휴재를 하게 해주는 플랫폼이 작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복지를 해주는 플랫폼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무급휴재이기에 실제 휴재율은 25% 정도뿐이었습니다.

연재주기 문제는 물론, 현재 업계의 계약엔 분량의 하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량을 작업해도 업체에선 추가로 지불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막을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독자들은 많은 분량을 좋아한다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실연재와 많은 분량이 창작자의 미덕으로 선호되다 급기야 이것이 창작자의 역량으로까지 연결 지어지는 상황에 불안한 개인은 더욱 자신을 무리시키게 되는 구조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려 해도 기본적으로 업체가 요구하는 분량과 연재주기가 가혹한 상황이라 이 노동량은 하루라도 일을 제대로 못하면 마감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이기에 이에 따른 철야작업과 마감 불안감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재방식이 아닌 건당으로 작업하는 창작자의 경우도 언제 일이 끝길지 알 수 없어 계속 불안한 상황과 낮은 단가로 인해 무리하게 일을 받아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은 어려움으로 제보되고 있습니다.

주변 작가분들께 직접 건강상황을 여쭙보니, 앞에서 소개한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10명 남짓 모여 있는 대화방에서도 쉽게 많은 질병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앉아서 작업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 심하게 왔고 당 수치가 너무 올라서 당뇨약을 몇 달 먹고 있다. 어깨와 목이 너무 아파서 일주일에 세 번씩 한의원 가서 물리치료와 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우울증도 있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장시간 앉아서 작업하다 보니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회전근과 손목 통증이 있다.”

“스트레스로 호흡 곤란을 경험했지만 작업 때문에 병원 갈 시간도 없는 상황이다.”

“허리가 매우 안 좋아 매일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작업 시간 부족으로 스트레칭으로 버티다 못 버티겠다 싶을 때 병원에 방문한다.”

“작업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프리랜서의 특성상, 병원을 가면 작업이 밀리기 때문에 쉽게 가기 어렵다.”

“늘 마감에 쫓기는 기분... 발주처로부터의 가스라이팅, 안 좋은 리뷰와 비방댓글을 보면 너무 괴롭다.”

“시간대비 과도한 노동으로 외출할 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없어 정신적으로 힘들다.”

과도한 노동량 외에도 콘텐츠가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작품이 게시되는 사이트 대부분이 댓글 기능을 운영하고 있어 독자의 의견을 편집부에서 받아 내용을 걸러내고 창작자에게 전달하던 과거

와 달리 현재는 즉각적으로 독자의 의견이 댓글란을 통해 전달되는 상황이며 더욱이 창작노동자는 대부분 프리랜서 상태이므로 본인 홍보를 위해 SNS 운영이 필수적인데 이를 통해 창작자와 독자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면서 어떤 보호막 없이 독자가 창작자에게 직접적으로 피드백 요구가 가능한 상황이나, 작품에 대한 감상이 아닌 창작자에 대한 욕설, 사상검증 등의 공격에 대한 방지책은 미비하여 창작자는 댓글을 안 보거나, 그냥 견디거나, 도저히 못 견딜 정도만 법적대응을 진행하는 식으로 창작자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함으로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로 고통 겪고 있지만,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은, 예술인도 2012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는 하나, 2019년 1월, 총 1,560여 건의 산재보험 가입실적 중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612건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만화분야는 3명에 불과하다는 것에서 다른 직군도 별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에 대해 여쭙니 가입 가능한 사실을 모르시거나, 낮은 수입으로 인한 가입비 부담, 산재증명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창작노동자 사이에서는 실비보험과 암보험 가입을 신규 진입자에게 적극 추천하며, 일을 시작하면 질병에 걸리는 것은 필연적이니 사보험으로 대비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낮은 경우는 사보험 가입도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산재보험의 적극적 적용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 직군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현재 기업의 책임은 철저히 빠져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바라는 바이며, 우리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 직군은 ‘현재 분야에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 할 의향 있음(일자리 계속할 의향 없음)’이 38.6%로, 2019년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결과인 2.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높은 순서 차례로 과도한 작업량(65.5%) > 직업의 불안정(60%) > 보수가 적어서(39.1%) > 근무환경이 열악해서(32.7%)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실제로 데뷔작을 마지막으로 차기작 없이 떠나는 창작자가 업계에 다수라는 점에서 이렇게 꿈을 안고 왔다가 병들어 떠나는 사람 없도록, 건강하게 양질의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투 산업에서의 산재

김도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

안녕하세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 타투이스트 도이, 김도윤입니다.

타투를 하는 사람들, ‘타투이스트’의 산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타투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타 문화예술노동자들처럼 이미 존재하는 직군에서 산재의 인정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면서 발생하는 산재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타투 산업의 성과만 이야기하자면, K팝과 K방역 등에 견줄 만하다고 자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작업비가 가장 비싼 작업자 중 절반은 한국인이며, 세계 타투의 트렌드는 서울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정도로 타투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은 독보적입니다. 브랜드 피트, ‘파리에 가 있는 에밀리’ 릴리 콜린스 등 유명 헐리우드 스타들의 전담 타투 아티스트들은 상당수가 한국인들입니다. 세계 각 도시를 대표하는 타투 스튜디오의 간판 작업자들은 전부 김씨, 이씨, 박씨들입니다. 코로나19가 지구를 뽕뽕 얼리기 전,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의 필수 코스 중 하나가 한국의 타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간 모은 휴가비를 모두 들고 한국으로 건너와 타투를 받는 프랑스 인들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손님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작업자도 상당수였으며, 높은 부가 가치의 관광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타투의 장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타투 산업에 대한 자랑만으로 저에게 할당된 모든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타투 산업 안에 존재하는 산재를 이야기하러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의 타투 산업은 세계 문화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이룬 최고의 성과 중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타투는 한국에서 불법입니다.

92년 판례에 따라 ‘타투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지니지 않은 한국의 모든 타투이스트들은 범법자입니다. 그렇다고 의사가 타투를 하면 합법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타투 기기와 용품은 의료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작업을 한다 해도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혹은 타투는 예술행위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의사가 그린 대부분의 타투는 예술성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어떤 누구도 합법적으로 타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1,300만 명의 한국인은 그림, 눈썹, 아이라인 타투 등을 통해 이미 생활 속에서 타투를 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직접 세어보니, 남성 국회의원들의 약 30% 정도가 눈썹 타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타투는 ‘문신’이라는 이름으로 죄인에게 사라지지 않는 표식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낙인찍힌 범죄의 표식을 덮기 위해 더 크고 화려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결국 ‘문신’은 범죄자들의 문화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가 한국으로 카피/페이스트 되어 조직폭력배들에게 전파되었고, 사법부도 이에 질세라 일본 사법부의 판례를 카피/페이스트 하여 ‘타투는 의료행위’라는 웃지 못할 일본의 판례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문신은 흥한 문화라는 국민적 공감기가 있었기에 보편적 상식을 벗어난 판례에도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화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자기표현과 패션의 한 영역이 되었고 하나의 큰 산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웃지 못할 판례의 숙주인 일본 사법부마저 지난 9월 이 판례를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타투를 의료행위라 주장하며 국민의 안전을 법제도 밖으로 내몰고 방치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저희 타투이스트들이 겪는 사소한 혹은 중대한 사건 사고를 ‘산재’라 지칭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보다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절차로 저희는 타투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을 선택했습니다. ‘너희가 왜 산재를 논해?’라는 질문을 받기 전에 ‘너희가 왜 노동자야?’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숙명이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저희는 지금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왜 산재를 논해?’에 답하겠습니다.

타투유니온이 생각하는 산재는 ‘사전에 막을 수 있으되, 법제도의 미비로 발생하는 산업 안의 모든 재해’입니다. 지금부터 시대와 문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법제도로 인하여 생기는 저희 타투 산업에서의 산재를 전하겠습니다.

타투 노동자들은 다른 문화예술 노동자들처럼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타투유니온이 설립되고,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병원인 녹색병원은 임상혁 원장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TF를 구성하여 타투 산업 현장의 건강 실태를 조사하였고, 타투이스트들을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 30대가 대부분인 타투이스트들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손목터널증후군과 척골신경압박증후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대로 노동교육을 받지 못한 타투이스트들은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스스로의 노동시간을 체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도한 노동시간이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제

도 안의 정상 노동으로 인정받아 노동 전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과도한 노동 몰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법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산업재해가 있습니다. 부상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현상으로 발생하는 노동의 부재 시, 국가의 돌봄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왜 산재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식적인 법제도의 정비로 사전에 막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노동 재해는 산재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제도가 정비 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납세와 국가의 돌봄이 따라오는 것은 지극히 순리적인 과정입니다. 미흡한 법제도로 만들어지는 부조리와 이로 인한 재해를 산재라 하지 못한다면 30년간 이어져 온 각 부처의 직무유기와 이익단체들의 횡방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이와 같은 논리로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사라질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업과 노동의 형태는 나날이 다양해지고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이 순식간에 등장합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노동환경에 맞추어 노동현장에서의 재해를 산재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오랜 시간을 다투며 체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못난 모습과 기준은 상식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회의 합의로 혹은 법제도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재해임에도 막지 못했다면 그것이 산업재해이고 사회재해입니다. 이 기준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사례 말고도 타투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또 한 가지 산재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사법부의 판례상 타투는 의료행위이며, 불법입니다.

하지만 타투 문화를 즐기는 소비자는 이 판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기준보다 너무도 수준이 미달 된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타투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동의하고, 문화예술 행위임을 확신하기에 타투를 받기 위해 타투이스트를 찾아갑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도 타투를 받을 때는 타투이스트를 찾아옵니다. 이는 법적 판단 위에 존재하는 인류의 보편적이고 상식적 판단입니다. 문제의 재해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행되는 일종의 서비스업과 같은 업무 형태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분쟁은 다툼이 될 수도 있고, 민사적인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서비스업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비스를 받았던 소비자는 분쟁에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타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악용합니다. 불법의료행위를 했음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본인이 원하는 배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진심으로 타투가 의료행위라 생각하면서도 타투를 의뢰했던 것이라면 불법의료행위를 청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 처벌은 타투이스트가 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신고를 조건으로 금전적 요구를 한 소비자는 자신이 지금 협박과 공갈이라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망각합니다. 타투유니온에서 양측의 중재를 위해 연락을 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작업자의 부족한 소양에 의해 시작된 분쟁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손님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꽤 있

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이를 위해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협박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타투가 불법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계획적인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업비가 저렴한 곳을 골라 한 달 동안 십여 개의 타투를 받고, 차례로 한 명씩 협박을 하여 30배 정도의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타투유니온으로 접수된 여러 건의 피해 사례가 비슷한 유형인 것을 알게 되어 확인해본 결과, 한 사람의 계획적 범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례도 한 건이 아니며, 타투유니온에 접수된 사례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동일한 형태의 범행이 발생하면 작업자들끼리 공유하기 때문에 매년 여러 건의 유사 사례가 생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과 사기 혹은 단속과 신고 과정에서 실제 경찰 수사를 받던 작업자가 우울증과 압박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림을 그리던 미대생들이 타투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되고, 생명을 내려놓는 것은 부조리에 눈감은 산업과 사회가 만든 재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타투 산업에서의 재해가 법적으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산이 존재하며 일반적 산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잘 압니다.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요건을 충족하기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 먼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투유니온은 그 탄생부터 기존 노동조합의 틀을 벗어나 시작되었습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없으니 노동조합이 아니란 소리도 들었고, 불법문신업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수준 떨어지는 언론사의 비난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더 단순하고 명료하게 대답하기 위해 노력했고, 우리가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타투유니온의 시선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법제도를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재해를 막지 못했다면 그것은 인재이며, 이를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산재로 인정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지극히 보편타당한 기준이라고 확신합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없어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듯 배보상의 대상인 고용기업이나 고용인이 없어도 산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재로 인한 배보상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재가 인재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책임 지우지 않으면 노동자의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기업과 개인의 금전적 손해만을 생각합니다. 존귀함과 천박함의 격이 너무 멀어 슬픔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존재하고 있되 존재하지 않는 산업이 처한 넓은 의미의 산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산재의 근본적 개념을 생각한다면 결코 넓은 의미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타투 산업은 존재하고 있고, 타투이스트들은 법제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또 납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지당한 순리를 거스르는 시작점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당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타투의 법제화는 순리를 따르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고 이는 산업의 재해로부터 지극히 상식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언급된 많은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산재 사례를 들으며, 역시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슬프기도 하고, 희망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희망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